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대응 방안(개인정보보호법\_기술적 보호조치)

구분	분야 (해당 법 조항)		세부점검항목	보호 조치	제안 상품
네트워크 보안	제 6조	접근 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으로 제한	네트워크 방화벽	이네트너 UTM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인증 수단 적용	VPN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비인가 사용자 접근 통제	IPS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 차단	세션 차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웹방화벽	이네트너 웹방화벽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	웹취약점 점검	이네트너 웹취약점 점검
구분	분야 (해당 법 조항)		세부점검항목	보호 조치	제안 상품
서버 보안	제 5조	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	접근/권한 제어 및 기록 보관	이네트너DB 접근제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 기록 및 최소 3년간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발급하며, 다른 개인정보 취급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		
	제 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	접속기록 보관	
			단,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및 관리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제 7조	개인정보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저장시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저장	정형/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이네트너DB 암호화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SHA265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개발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암호화 적정성 평가 후 암호화 수행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	암호화 키 관리 서버 분리		
구분	분야 (해당 법 조항)		세부점검항목	보호 조치	제안 상품
PC 보안	제 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	백신	이네트너서버 /PC백신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제 7조	개인정보 암호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저장	파일 암호화	이네트너 PC필터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매체 보안	
	제 13조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함 1)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개인정보 파일 완전삭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함 1)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술적 보호조치)

엘림넷, 개인정보보호 원-스탑서비스 비교표

네트워크보안 (UTM)	업체명	S사	L사	S사	D사	엘림넷
	제품명	Secure MF2 50	Neobox XN1	Neobox X1	shadowwall F50	이네트너UTM(SG105)
	수용 PC	50대	50대	50대	10대	50대
	FW 성능	1G	1G	1.5G	100M	1.5G
	IPS 성능	200M	970M	230M	없음	700M
	VPN 성능	300M	230M	200M	100M	325M
	최대 세션	N/A	1,200,000	500,000	200,000	1,000,000
	IPS 패턴	6,000+	6,000+	9,000+	없음	20,000+
	Memory	4G	2G	512MB	1G	2G
	HDD	250G	없음	없음	없음	320G
	장점	*타사대비 높은 스펙 보유 *하드디스크 장착으로 보안(방화벽) 로그 및 VPN 접속 로그 1년 이상 보관				
서버 보안 (DB 암호화)	업체명	S사	L사	S사	D사	엘림넷
	제품명	시큐어디비				이네트너DB암호화
	정형데이터 암호화(DB)	0	없음	없음	없음	0
	비정형데이터 암호화(이미지, 영상, 파일, 녹취)	없음				0
장점	*HIS(EMR/OCS/PACS/건강검진) 파트너 프로그램 호환성 테스트 완료 *HIS(EMR/OCS/PACS/건강검진) 파트너 프로그램에 맞는 보안 정책 수립 *정형/비정형데이터 동시 암호화 지원 *의원 상품 없음					
PC 보안 (PC 필터)	업체명	S사	L사	S사	D사	엘림넷
	제품명	에스원PS	DefCon 개인정보보호	오피스키퍼	Shadow-PE	이네트너PC필터
	공용키 암호화	없음	없음	없음	없음	0
	PC개인정보 보호	0	0	0	0	0
	매체제어	0	0	0	0	0
	HIS 프로그램과 출력물보안 연동	없음	없음	없음	없음	0
장점	*HIS(EMR/OCS/PACS/건강검진) 파트너 프로그램 호환성 테스트 완료 *HIS(EMR/OCS/PACS/건강검진) 파트너 연동 개발로 프로그램에서 인쇄시 워터마크 삽입 및 로그 저장(내부자 유출 방지 및 검출 가능)					
PC 보안 (백신)	업체명	S사	L사	S사	D사	엘림넷
	제품명	V3	V3	터보백신	터보백신	이네트너PC백신
	바이러스 감염 방어	0	0	0	0	0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 보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0
장점	*HIS(EMR/OCS/PACS/건강검진) 파트너 프로그램 호환성 테스트 완료 *HIS(EMR/OCS/PACS/건강검진) 파트너 연동 개발로 바이러스 감염 방어 및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 보호					
백업 (클라우드 백업)	업체명	S사	L사	S사	D사	엘림넷
	제품명					이네트너백업
	원격 백업	없음	없음	없음	없음	0
	장점	*HIS(EMR/OCS/PACS/건강검진) 프로그램 호환성 테스트 완료 *데이터 백업시 암호화 통신 구간 사용, 데이터 저장시 암호화 및 압축 저장 *랜섬웨어 감염 원천 차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및 과태료 - 실체법 위반은 징역형 또는 벌금, 절차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수집·이용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공·위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주체 권의 보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18조, 제19조, 제26조)							
	민감정보 처리기준 위반(제23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직접마케팅 업무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 제2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안전관리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의무 위반(제22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거절(제35조)
	탈의실·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직접마케팅 업무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기준 위반(제25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 받은 자(제22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관계물품·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제63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및 관리실태 점검

<b>관리실태 점검</b>	<b>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b>	<b>과징금 제도 신설</b>
<p>▶ 보호조치 미비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p>	<p>▶ 징계권고 대상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표자(CEO) 및 책임 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제65조제2항)</p>	<p>▶ 주민번호 유출 등 경우 2년 이하의 징역</p> <p>▶ 과징금(5억원 이하) 부과 (제34조의2제1항)</p>

문의 : 정보보안사업팀  
02-3149-4822  
(주)엘림넷

안전성 확보조치 모두 이행시 과징금 면제